

의안번호	2202269
의 퇴 인	정점식 의원
회 답 일	2024. 9. 4.
추계번호	24A239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관련 시책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추가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가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20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관련 시책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이 추가되더라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현행 법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보조”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이 단순히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라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 개정안이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단순히 보조하는 취지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를 합한 전체 재정소요는 변하지 않음
 - － 또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섬 발전 촉진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어촌·어항법」 등에 따라 관련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음

[표 3]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확충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	회계기금 (소관)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예산
벽지노선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토교통부)	33,930	33,680	33,680	37,537
농촌형교통모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20,476	20,928	21,655	24,924
도시형교통모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토교통부)	25,237	24,000	30,260	36,036
내항여객선운임보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해양수산부)	14,595	14,567	19,836	19,67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다만, 개정안은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의도하고 있으므로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정책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